

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

I. 개정배경

- 건설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2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등에서 제시된 개선안 반영
- 건설업 관련 제도와 관행을 국제기준과 시장원리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유도
 - 저가하도급, 공사실적 허위제출 등 불법·불공정 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건설산업으로 발전 도모

II. 개정 주요내용

개정사항	내 용
1. 시공 및 하도급제도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규모 공사 직접시공의무제 도입 ○ 의무하도급제 ○ 부대입찰제 폐지
2. 공정한 거래관행 확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공공사 하도급저가심사 의무화 ○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및 4대보험료 원가반영 ○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내용 통보 ○ 시공능력평가자료 허위제출 제재강화
3. 건설산업발전기반 조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 설치 ○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 구축 ○ 공공발주자에 대한 점검·평가 계획 수립
4. 기타 제도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설업 폐업제도 도입 및 건설업자의 지위승계 ○ 건설분쟁조정제도 활성화

IV. 세부개정내용

1. 시공 및 하도급제도의 개선

□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제 도입(제28조의2)(2006년 1월 시행)

- 무자격 부실업체들의 난립과 “입찰브로커” 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시공제도를 도입
- 일정금액 미만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토록 의무화
- 도급 받은 건설업자는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
- 직접시공계획을 미제출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직접시공의무 위반시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 부과

□ 의무하도급 폐지(제30조제1항 삭제)(2008년 1월 시행)

- 의무하도급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하도급비율을 규제함으로써 효율적인 건설생산체계 구축을 저해

- *의무하도급제도 : 일반건설업자가 20억 이상 공사를 도급받을 경우 20%이상을 하도급하여야 함(30억 이상 → 30% 이상)
- DDA 협상시 미국, 호주 등에서 폐지를 요구
- 제도도입 당시와는 달리 현행 실제 하도급 평균비율은 의무하도급 비율을 훨씬 상회하여 규제의 실효성이 약화
- 다만, 제도변경에 따른 전문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폐지

□ 부대입찰제도 폐지(제30조제2항)(2005년 7월 시행)

- 부대입찰제도는 전문건설업체의 부실견적, 중소전문업체의 입찰기회 상실 등 시행상 부작용 야기하여 폐지
- * 부대입찰제도 : 건설업자가 미리 하도급받을 전문건설업자의 견적을 받아 도급금액 산정할 수 있고, 도급시 견적대로 계약의무
- 규개위 의결(2001년 12월)에 따라 공공공사 부대입찰제(국가계약법) 폐지(2003년 12월), 건산법상 부대입찰제 존치 실효성 상실

2.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

□ 공공공사 하도급저가심사 의무화(제31조)(2005년 7월 시행)

- 현재는 저가하도급 심사가 임의화되어 있고 발주기관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여 저가하도급 방지에 미흡
-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저가하도급 강요 등으로 하도급자의 적정공사비 확보가 더욱 어려운 실정
- ※ 하도급저가심사제도(법 제31조)
- 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하여 하도급률이 원도급 수주금액의 82% 미만인 경우 하도급 적정여부에 대해하여 심사할 수 있음(2000. 5월 도입)
- 심사결과 85점 미만인 경우 하도급 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가능
- ※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(2003.9)에 의하면 원도급금액 대비 80%미만 하도급이 전체의 61.2%로 저가하도급이 만연
- ⇒ 국가·지자체,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발주공사에 대하여 심사제도를 의무화하여 지나친 저가하도급 방지

□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내용 통보(제36조)(2005년 7월 시행)

- 원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추가금액을 지급받고도 하수급인에게 은폐, 어음지급 등 불공정 거래관행 성행
- ※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(2003년 9월 전문협회)결과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 계약금액을 제대로 조정받지 못한 업체가 54% ⇒ 하수급인이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내용을 몰라서 입게 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자는 설계변경내용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함
- ※ 건설교통분야 부패방지추진기획단 개선과제(2003년 7월)

□ 시평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제재강화(제82조)(2005년 7월 시행)

- 시공능력평가지 건설공사실적 등을 허위 제출할 경우 처벌규정(1천만원 이하 벌금)이 경미하여 최근 허위제출사례 급증
- ※ 건설업자 시공실적(3~5년) 조사결과 767개 업체, 1,791건(1.7조) 과다신고
- ⇒ 현행 1천만원 이하의 벌금규정과 함께 6월 이하의 영업정지를 부과토록 하여 허위제출에 대한 제재강화

□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위가반영(제34조)(2006년 1월 시행)

- 원수급인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함
- 원수급인이 발급수수료(하도급대금의 평균 1.08%)를 일방적으로 부담함에 따라 지급보증을 회피하는 사례 다수 발생

* 실태조사(2003.7) : 지급보증 안함(39%), 일부 보증(50%), 모두 지급보증(10%)
 ⇒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

□ 4대 보험 소요비용 공사원가 반영(제22조제5항)(2006년 1월 시행)

- 기간 원 · 하도급자간 하도급계약시 보험료 · 제세공과금을 일괄하여 공과잡비로 계상, 보험료를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
- ※ 4대보험 : 산재보험, 고용보험, 국민건강보험, 국민연금
- 보험료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건설업자는 도급계약후 보험비용이 부담되므로 보험가입을 회피하는 경향
- ※ 고용보험의 경우 일용근로자 178만명중 90,315명(5%) 가입(노동부, 2004.4)
- ⇒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4대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비용을 보전받도록 함

3. 건설산업발전기반 조성

□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 설치(제6조의2)(2005년 7월 시행)

- 건설산업과 관련된 주요정책 결정 등의 심의를 위해 관 · 산 · 연등이 참여하는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 설치근거 마련
- 재경부(입찰제도), 과기부(엔지니어링), 노동부(근로자), 공정위(하도급) 등의 참여하에 주요정책 및 제도변경 조율

□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 구축(제24조)(2005년 7월 시행)

- 건설산업정보망의 운영을 국토연구원(1999)에서 위탁수행하고 있으나 연계시스템 급증 등으로 효율적 관리에 한계
- ※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: 건설업체DB, 건설행정정보, 건설공사정보 등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해 1999년부터 국토연구원에 위탁 · 운영
- ⇒ 건설산업정보망의 효율적 운용 및 유지관리 기반 구축을 위하여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 구축 · 운영 근거마련

□ 공공발주자에 대한 점검 · 평가(제86조의2)(2005년 7월 시행)

- 발주자의 발주능력을 제고하고 발주공사에 대한 감독강화를 유도하여 건설부조리를 방지할 필요
- ⇒ 건교부장관이 발주기관의 건설산업 제도의 적정한 운용 등에 대한 점검 · 평가할 수 있도록 함
- ※ 평가결과 우수한 발주자에게는 예산,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

4. 기타 건설산업제도 개선

□ 건설업 폐업 및 지위승계(제20조의2 및 제85조의2)(2005년 7월 시행)

- 현재 등록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등록증 반납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절차상 혼란, 처벌 회피수단으로 활용
- ※ 등록반납 : 2000년 1,218건, 2001년 1,081건, 2002년 3,556건
- ⇒ 건설업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신고하도록 하고, 6개월 이내 재등록하는 경우 종전 지위(영업정지효과, 위법사실) 승계

□ 건설분쟁조정제도 활성화(제72조)(2005년 7월 시행)

-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(1989년 12월)
- 분쟁당사자 일방이 조정신청을 거부하면 신청이 불가능하여 상당수 피신청인이 조정거부, 조정기구의 실효성 저하
- * 건설분쟁 조정실적(1998년 ~ 2003년) : 34건
- ⇒ 국가 · 지자체 등이 피신청인일 경우 조정에 응하도록 강제하여 분쟁조정 활성화 도모

건설산업기본법령시행령 개정

I. 개정 배경

- 직접시공의무제 도입 등 건설산업기본법 개정(2004년 12월 31일 공포)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 마련
 - 직접시공제 대상공사, 일괄하도급시 계획·관리·조정 범위 등
- 규개위의 규제정비 의결사항 반영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

II. 주요 개정내용

1. 직접시공범위 설정 및 하도급제도 개선

□ 직접시공의무제 적용범위(제30조의2 및 별표6,7)(2006년 1월 시행)

- 현행 운찰제적 입찰제도 등을 고려하여, 무자격 부실업체가 수주할 가능성이 높은 30억 미만 공사를 대상
 - ※ 30억 미만공사(2002년말, 일반·전문통계연보) : 전체 100조중 43조
- 직접시공의무비율은 공사수행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입찰브로커 퇴출이 가능한 30%이상으로 설정
- 직접시공계획서 통보기간은 계약일부터 30일로 함
- 직접시공의무 미이행시 6개월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고, 직접시공계획 미제출시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
 - ※ 유사입법례 : 재하도급 위반(영업정지 6월), 하도급 미통보(150만원 과태료)

□ 일괄하도급시 계획·관리·조정 범위(제31조)(2005년 7월 시행)

- 일반건설업자가 예외적으로 일괄하도급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·관리·조정 범위 구체화
 - 인력·자재·장비·자금 등의 관리 및 시공관리를 위한 조직체계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기준을 건교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
 - ※ 종전 건교부 지침(2003.5월)으로 운용하던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

□ 전문업자의 복합공사 원도급범위 확대(제21조)(2006년 1월 시행)

- 전문건설업자의 수주물량 확대를 위하여 복합공사 원도급허용 범위를 현재 1억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공사로 확대
 - ※ 현행 1억 이상 2억 미만 복합공사(2003년 원도급기준) : 전체 93조중 1.4조 (1.6%)

2. 건설산업의 공정성·투명성 제고

□ 보험료 등 공시위가 반영(제26조의2 및 제34조의2)(2006년 1월 시행)

- 건설공사의 4대보험료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원가반영 기준을 건교부에서 고시할 수 있도록 함
-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보증수수료 초과지급금에 대한 사후정산제도 도입

- 발주자가 건설업자의 보험료 실제납부 내역을 확인하여 초과지급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(금년말 세부집행 기준 마련)
- ※ 기존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사후정산방식과 유사

□ **시평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제재강화(별표6)(2005년 7월 시행)**

- 공사실적 등의 허위 제출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하여 현행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4월 영업정지를 부과
- ※ 유사입법례 : 하도급 허위통보(영업정지 4월)

□ **건설산업 재해 발생에 대한 처벌강화(별표6)(2006년 1월 시행)**

- 당초 건설현장에서 3명 이상 사망시 노동부장관이 건설업 등록관청에 해당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요청하였으나, 2004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이 개정되어 2명 사망한 경우에도 노동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함.
- 이에 따라 건설법상 처벌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처벌기준을 강화함(2월 영업정지 또는 2,000만원 과징금)

3. 건설산업 발전기반 마련

□ **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(제3조 내지 제5조)(2005년 7월 시행)**

- 건설산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교부차관을 위원장(부위원장:건교부 1급)으로 하는 위원회 설치
- 정부위원은 재경부·행자부·과기부·산자부·노동부·환경부·공정위 등의 국장급으로 구성 (민간위원은 건교부장관이 위촉)

□ **건설산업정보망 종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건설산업정보망의 운영체계 명시(제26조의3)(2005년 7월 시행)**

건설산업기본법령시행규칙 개정

1. 개정배경

□ **건설업 폐업신고제도 도입 등 건설산업기본법 개정(2004년 12월 31일 공포)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 마련**

- 저가하도급 심사대상 설정, 직접시공계획 통보, 건설업 폐업신고제도 세부시행 방안 등

□ **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요건 완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**

II. 주요 개정내용

□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(제27조의2)(2005년 7월 시행)

- 현재 건교부장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가하도급 심사대상 하도급율(82%미만)을 시행규칙에서 규정
- ※ 저가하도급심사제도(법 제31조)
 - 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하여 하도급률이 원도급 수주금액의 82% 미만인 경우 하도급 적정여부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음(2000년 5월 도입)
 - 심사결과 85점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내용 변경요구 가능

□ 건설업 폐업신고 절차(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4)(2005년 7월 시행)

- 건설업 폐업신고 서식 마련, 폐업사실 정보통신망 공고
- ※ 폐업신고제도 : 처벌회피를 위한 건설업 자진반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업후 6월이내 재등록하는 경우 종전 지위 승계(2004년 12월 도입)

□ 직접시공계획서(제25조의5)(2006년 1월 시행)

- 건설업자의 직접시공계획서식을 마련하여 도급계약후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공종과 하도급공종을 분리 신고토록 함
- 직접시공할 공사량 · 단가 · 예정공정표 제출

□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요건 완화(제28조)(2005년 7월 시행)

-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(1996년 도입)를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나, 3천만원 이하 하도급계약시 면제
- 1996년 도입시 3천만원 이하로 운용하여 그간의 물가상승률(30.6%)을 미반영 → 4천만원 이하공사로 조정
- ※ 건설 GDP디플레이터 : 1992. 9(1996) → 100(2000) → 121.3(2003)

□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요건 하향조정(제29조)(2005년 7월 시행)

- 발주자는 수급인의 부도, 공사에가대비 88%미만 수주 등으로 하수급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
- 적격심사제, 최저가 낙찰제 등 현행 입찰제도의 낙찰률(88%미만이 대부분)을 고려할 때 거의 모든 공공공사가 직접 지급요건에 해당되어 불합리
- ※ 적격심사제도 적용공사 최저낙찰율 : 1,000억이상 공사(73%), 300억 이상(78%), 100억 이상(83%), 50억 이상(85.5%), 10억 이상(86.75%)
- ⇒ 현행 저가하도급 심사대상 하도급율(82%·직접공사비 수준)을 감안하여 88% → 82%미만인 경우로 하향조정

